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의
역할과 활동방향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약회의
박 찬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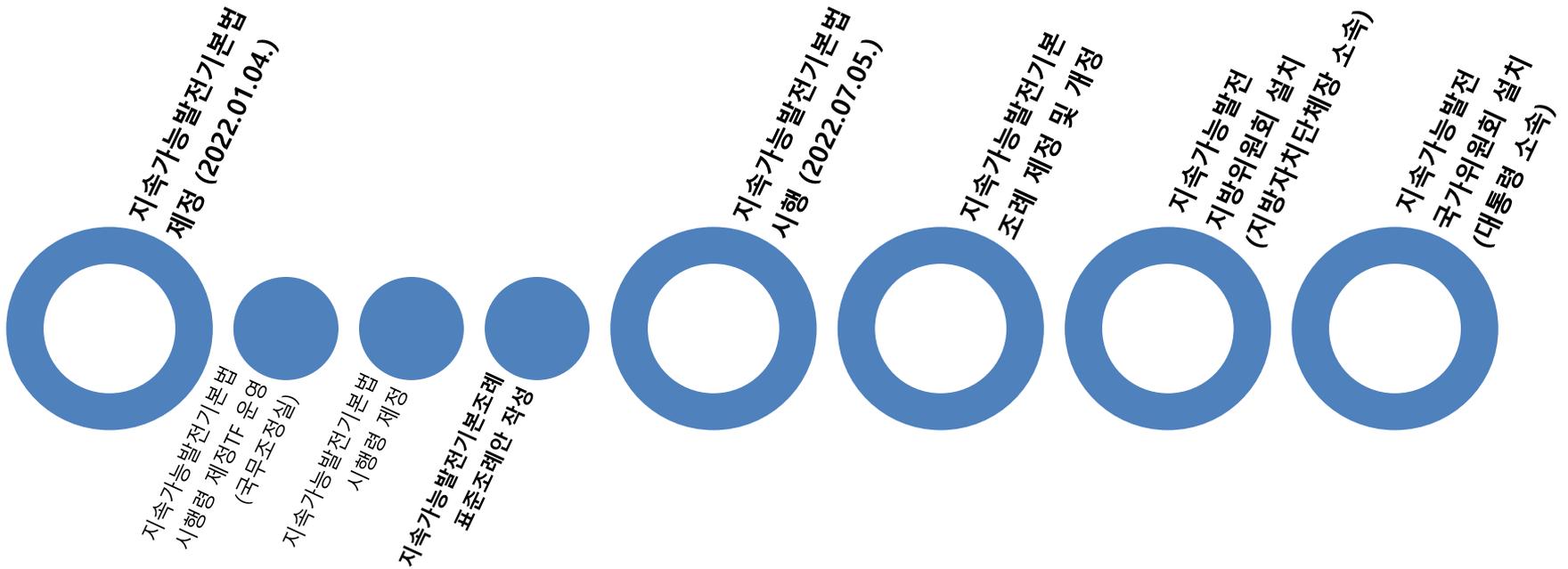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본의회 통과 (2021.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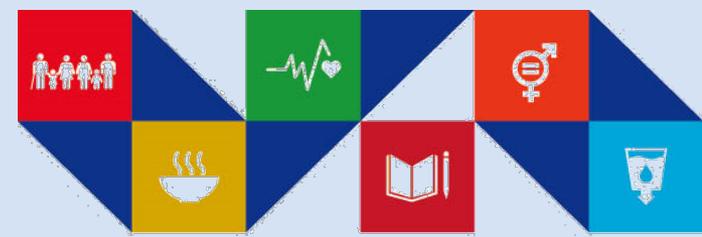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 과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신속 제정의 필요성

- ✓ 국가위원회(60명 이내) 중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17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5년마다 재검토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요내용 요약



구분	국가	광역시·도	시·군·구
규정	대통령령	조례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국가기본전략	지방기본전략	지방기본전략
	2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2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2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
점검	2년마다	2년마다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2년마다	2년마다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 (점검결과+지속가능성 평가)	2년마다	2년마다	2년마다
	국회에 제출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
심의기구(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할 수 있음.(명칭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60명 이내 (당연직: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지방위원회 위원장)	단체장 소속의 위원회	지방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결정
실무조직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사무 지원)	사무국 설치 또는 지정	사무국 설치 또는 지정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관협력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지방조례의 범위와 내용

❖ 주요내용

- ✓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5항)
- ✓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 (제9조 4항)
- ✓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2년마다) 절차 (제11조 3항)
-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통보 절차 (제14조 3항)
- ✓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위원회 통보 절차 (제14조 4항)
- ✓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6항)
-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3항)
- ✓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3항)
- ✓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4항)**
- ✓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의 시행 (제28조 3항)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의 핵심쟁점

-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 ✓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1항)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지속협의 지위와 역할

❖ 지속협의 지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3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위는 민관협력단체**

❖ 지속협의 역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제28조 4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업무의 수행**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지속협 지위의 문제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미비.**
(지역별 현행 조례상 지방지속협 설치·운영 조례를 유지할지, 재정·개정할지에 대한 문제 발생)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기획조정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표준조례안 구성 제안

1. 표준조례안 기본내용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지방조례의 범위와 내용 (4페이지)
-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2조)

2. 지방위원회 구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 ✓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 마련
- ✓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더불어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

3. 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추진

- ✓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지속가능발전교육·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숙의공론화장 운영) 등 기본법 보칙에 명시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추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년 활동방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년 활동방향

1. 지방 지속가능발전 제도의 완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개정에 적극 참여

(전국)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표준조례안
작성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개정 노력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을 위한 의견 개진 (광역시·도)

업무의 통합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속의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요청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이해가 높은 공무원이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

지속협 대표자의 당연직 참여, 인재 추천,
기업 및 시민단체 참여 요청 등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독립적·보완적 관계 정립



2. 구체적인 지방의제의 발굴과 해결과정의 중심에 위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의 실행의제 발굴

- 구체적인 지역 문제 발굴과 문제 정의 (발굴·기획)
예) 경상남도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지역문제발굴 챌린지워크
-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시민교육과 홍보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실행의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 환경 외 사회·경제 부문의 네트워크 강화

문제해결의 주체로서의 주민 역량과 주민자치의 강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조직과의 협력관계 강화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결합



3.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노하우 확보

지속가능성 평가

-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지방 보고서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와 계획의 모니터링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있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행정 계획 수립·변경 등 지방위원회 검토사항 분석 및 의견 제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 지방기본전략의 실행의제(지역문제) 발굴에 따른 지표 개발

숙의공론장 운영

- 지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안 개발